

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

신청인	소속	직급	직위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

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 제1항에 의한 정년퇴직에 앞서 조기 사회적응을 위하여 20 년 월 일부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따라 퇴직준비교육을 희망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 본인 성명:

(서명 또는 인)

병 무 청 장 귀하